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7]	관의	장										
람									제11호	<u>.</u>	2016	. 3.	04(금)
	고	시											
○ 남	원시 고	시 제	2016-2	29 호	남원시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 남	원시 고	시 제	2016-3	31 호	남원시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3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287 호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

_	1	1		T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고시 제2016-2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남 원 시 장

2016년 03월 0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 업 명		위 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 업 구 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F 님 'G		11 7 1	160	ОП	번호		1 1 1 0	준공예정일	100	1,44
네마실1길 소.	로 ¦	남원시	도로	소로	1–17ই	향교동 246-3	L=90m	2016. 2	1 101 21	
개설공사	ð	향교동	工工	江上	1-17오	~향교동 133-5	B=10m	2016. 8	남원시	
비사벌아파트	앞 남	남원시	도로	소로	3-41ই	왕정동 114-5	L=60m	2016. 2	남원시	
소로 개설공사	<b>\}</b>	왕정동	工上	江上	3-41오	~왕정동 139-3	B=6.0m	2016. 6	급전시	

-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 사 명 :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분할 지번	편입 면적	소	: 유 자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시 읍 시민목 (		(m²)	(편입)	(m²)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비고		
1	남원시	향교동	246-3	철	383	246-3	170	남원시					
2	남원시	향교동	267-6	철	96	267-6	61	남원시					
3	남원시	향교동	267-2	철	962	267-2	590	남원시					
4	남원시	향교동	992-1	철	85	992-1	50	남원시					
5	남원시	향교동	133-5	철	180	133-5	82	남원시					

□ 공 사 명 :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

연번	위	치	지 번	진	지 적	분할 지번	편입 면적	소	: 유 자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동	1 6	목	(m²)	(편입)	(m²)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왕정동	139-3	도	49	139-3	49	남원시					
2	남원시	왕정동	584-1	구거	3242	584-1	277	국(농림축 산식품부)					

남원시 고시 제2016 - 31호

시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3월 4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남원 월락동 도시계획도로(중로3-30, 3-29호선, 소로3-148)사 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의 규모

위치	등급	류별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m)	시설결정일
	계				L=270m, B=6~12m	
남원시	중로	3	30	월락동 13-2 ~ 월락동 152-2	L=136m, B=12m(개설)	남원시 고시 제2014-25호 (2014. 3. 28)
월락동	중로	3	29	월락동 131-6 ~ 월락동 157-9	L=26m, B=12m(개설)	남원시 고시 제2014-25호 (2014. 3.28)
	소로	3	148	월락동 29-3 ~ 월락동 180도	L=108m, B=6m (아스콘덧씌우기)	남원시 고시 제1994-28 (1994.12.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 풍산건설, 대표 안장용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58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초 : 2015. 12. 20 ~ 2016. 2. 28 나. 변경 : 2015. 12. 20 ~ 2016. 3.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6.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시

## (중로3-30)

순		지	번		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여	기외의 권리	-2 -
순 번	소재지	본번	부 번	지목	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자	권리의 종류	비고
1	월락동	5	2	도	284	284	국(건설부)		1		
2	"	13	2	도	1,587	48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현대에코르아파트 102동 ****호	손*실			기존도로 (대로1-3 )
3	"	15	2	도	298	254	(등기무)	고*국	_		미등기
4	"	16	1	도	350	301	국(건설부)		_		
5	"	18		도	86	6	남원시 월락동 150-**	김*애 외1인	-		기존도로
6	"	19		도	4,792	128	국(건설부)		_		
7	"	20	2	답	28	23	남원시				
8	"	20	3	도	15	10	남원시				
9	"	150	1	도	56	56	국(건설부)		-		
10	"	152	6	대	4	4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	주식회사 **건설	_		사용동의
11	,,	152	2	도	215	192	(등기무)	조*옥	1		미등기
11	,,	102	<u> </u>	<u></u>	210	14	(8/17)	五*号			소로3-1 48
12	"	622	86	구	103	103	국(농수산부)		_		
13	"	622	87	구	159	159	국(농수산부)		_		
14	"	157	5	도	1,026	13	국(건설부)				소로3-1 48
15	"	625		도	1,338	57	국(건설부)				소로3-1 48

# (중로3-29) - 26m 구간

ſ.	순	↓ -i) -i	지	번	지	면 적(m²)		소 유 자		소유권여	ш			
	순 번	소재지	본번	부번	목	지적	편매	주 소	성	명	권리자	권리의 종류	피	고
	1	월락동	157	5	도	1,026	311	국(건설부)						

# (지장물)

순	지	월 FII	지장물 포함규모 (	도로선 내)	소 유	자	ul ¬
위	번	형 태	규 모	면적(m²)	주 소	성 명	비 고
1	157-3 대	화 단 (큰샘어린이집)	2.9m×15m, 높이 1.2m	40.0	남원시 낙현길 **	최*정 외1인	
2	151-1 대	주택 (슬라브)	2.0~2.3m × 9.2m	1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33-**	황*령	미등기
3	150-2 주	함석지붕 (기둥 및 지붕)	1.6~2.0m × 8.6m	15.0	월락동 150-**	김*애 외1인	
4	152-3 대	차 고 지	1.3~1.8m × 5.8m	7.0	월락동 152-**	이*대	미등기

남원시 공고 제2016 - 287호

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3월 4일 남 워 시 장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제 21조에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 정 성별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등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정의 개정 (안 제2조제1호)
- 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비율 기준을 명시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 사항

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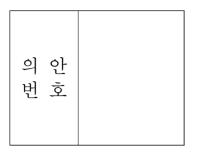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붙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 정되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등 남원시 각종 위 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기준을 명시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그 밖의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1. . ~ 2016. 2.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의뢰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시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남원시"를 "시"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부서"라 함은"을 ""담당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총괄부서"라 함은 남원시"를 ""총괄부서"란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용역・공사"라 함은"을 ""용역・공사"라"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대하여"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근거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거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4조제1호 중 "있을 것"을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있을 것"을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있을 것"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있을 것"을 "있는 경우"로 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시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함에 있어"를 "선정할 경우"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 대해"를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이를 초과 하여 위촉 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제4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8조 각 호 외의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해촉하여야"를 "위촉 해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촉을 원한"을 "위촉 해제를 원하는"으로 한다.
- 제9조 중 "수의계약에 의한"을 "수의계약 의"로 한다.
- 제10조제1항 단서 중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에 의하여"를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인정 할 때"를 "인정한 경우"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시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의"를 "시소속"으로,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이</u>	제1조(목적) <u>남원시</u>
<u>하 "시"라 한다)</u>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직·간접	
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	
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례・규칙・행정규칙(이하 "조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례 등"이라 한다)등 관계 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운영	소관 사무에 자문을 하거나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
	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
	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 <u>"이라 함은</u> 법	2 <u>"이란</u>
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	
연직으로 규정하거나 <u>남원시</u>	<u>시</u>
소속 공무원으로서 <u>시장</u> 이 임	<u>남원시장(이하 "시</u>
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u> 장"이라 한다)</u>
3. "위촉직 위원 <u>"이라 함은</u> 당	3 <u>"이란</u>

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시

- 4. <u>"담당부서"라 함은</u> 해당 위 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u>"총괄부서"라 함은 남원시</u>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 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u>"용역・공사"라 함은</u>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 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u>위원회에 대하여</u> 적용한다.

- 1. 법령에 <u>근거하여</u> 설치·운영 하는 위원회
- 2. 조례 등에 <u>근거하여</u>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3. (생략)
- ② (생략)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u>"담당부서"란</u>
 5. <u>"총괄부서"란 시</u>
 6. <u>"용역·공사"란</u>
· 1 <u>따라</u>
2 따라
<ul><li>3. (현행과 같음)</li><li>② (현행과 같음)</li></ul>
제4조(설치요건)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 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시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 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제5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위원 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 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 • 운영 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 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 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6조(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② (생 략)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 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폐

	1
-	<u>있</u> 을 경우
	2
-	
-	<u>있을 경우</u>
	3
	있는 경
	<u></u>
	<u></u> 는 경우
	제5조(사전협의) ①
	설치하려는
-	
	변경하려는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따른
	<u> </u>

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시

- 1. ~ 4. (생략)
-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4. (생략)
-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 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당연직 위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11/12/11/11/11/11/11/11/11/11/11/11/11/1
기키키 거 A
<u>선정할 경우</u>
<u>없으</u>
<u>면</u>
··
1. ~ 4. (현행과 같음)
②
사람은
<u>, р с</u>
<u> 따른</u>
예외
<u>로 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3
÷

원인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이를</u> <u>초과하여 위촉 할 수 있다</u>.

시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당해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u>때에는</u>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u>해</u> 촉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위원이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 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가 <u>해촉을 원한</u> 경우
- 4. ~ 6. (생략)

제9조(용역・공사 금지) 위원회 제9조(용역・공사 금지) ------

예외로
한다.
<u></u>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
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u> .
해당
<u>경</u>
으 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경우에는
 위촉 해
제하여야
1. (현행과 같음)
2 <u>치료가 필요한</u>
3 위촉 해제를
원하는
4. ~ 6. (현행과 같음)

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참여할 수 없다.

시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생략)
- ④ 위원회는 특정한 <u>위원에 의</u> <u>하여</u>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 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 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

<u>의</u>		<u>수의계약</u> 
제 10. 	조(위원회의 운 <sup>c</sup>	경 등) ①
	· 	
	- <u>보안이 필요한</u> 로 한다.	· 경우에는 예 
	<u>외로 한다</u> . (현행과 같음) 	- <u>위원에게</u>

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u>때에는</u>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생 략)

-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 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 다.
-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u>시의</u> 공무원이 위원 인 경우에는 <u>제외한다</u>.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 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 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할 <u>때에는</u> 5급 공무원에 상당

 <u>인정한 경우</u> <u>경우에는</u>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u>없으면</u>
제13조(수당 등) ① <u>범위에서</u>
<u>시 소속</u> <u>예외로 한다</u> . ②
  1. (현행과 같음)
2 <u>경우에는</u>

하는	- 여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시형	행규칙	) 이	조리	别 <u>/</u>	<u>니행에</u>
<u>관하</u>	<u>겨</u> 핕	l요한	사형	은	규?	칙으로
정한ī	<b>구.</b>					

제14조(시행규칙)	 <u>시행</u>
<u>에</u>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시

-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이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비 고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